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6666, 7948(병합) 가. 저작권법위반
나. 사기

피 고 인 1.가.나. A
2.가. 주식회사 B

검 사 김녹원, 이혜진(기소), 반현진, 정준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승, 홍성훈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6. 7. 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6666』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권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 목적, 상습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2018. 10. 22.경 피해자 C이 저작권을 가지는 'D' 등 22곡이 수록된 'E' LP음반 200개를 제작 및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개 LP, CD, DVD음반(음악저작물 총 264개)을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20. 5. 1. 설립된 음반 제작, 판매업체로, 그 대표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96 내지 241 기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025고단7948』

피고인은 LP판을 제작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통·번역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에게 2023. 7.경부터 2024. 6.경까지 해외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24.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그동안 밀린 급여는 있으나,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중요한 프로젝트이므로 계약을 연장하여 프로젝트를 마무리 해주면 밀린 급여와 앞으로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할 의도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7.경부터 2024. 8. 4.경까지 업무를 진행하게 하고도 급여 2,258,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666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견적서, 각 침해처리소명서

1. 수사보고서(순번 66)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262 I의 저작물 'J'의 경우 이 법원 2021고정1706 사건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2019. 7.경부터 2020. 3.경까지 저작자 I의 'K', 'L' 등 11곡이 수록된 LP음



반 1,100장을 제작, 판매한 사실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저작물 별로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바, 범죄일람표 순번 262 저작자 I의 저작물 'J'는 위 사건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5고단79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회사: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침해한 저작권의 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판사 나재영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사물관명	작품코드	출판명	제작일시	제작수	관련 자료 목록		
						저작자	저작자	원 저작자와의 신탁 계약서 (기록 3권)
1								237
2								237
3								237
4								237
5								237
6								237
7								237
8								237
9								237
10								237
11				2018. 10. 22	200			237
12								237
13								237
14								237
15								237
16								237
17								237
18								237
19								237
20								237
21								237
22								237
23								216
24								216
25								216
26								216
27				2018. 3. 8	200			216
28								216
29								224
30								216
31								216
32								216
33								216
34								216
35								216
36								216
37				2019. 2. 11	300			216
38								216
39								216
40								216
41								21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2

연번	사물관명	작품코드	출판명	제작일시	제작수	제1차, 제2차, 제3차 저작자 등	지작자	원 저작자의 신작 계약서 (기록 3점)
42								149
43								249
44								251
45				2018. 3. 9.	250			249
46								249
47								123
48								253
49								249
50								149
51								249
52				2019. 3. 9.	250			251
53								249
54								249
55								123
56								253
57								249
58								244
59								244
60								244
61								244
62								244
63								244
64								244
65								244
66				2018. 8. 15.	300			244
67								244
68								244
69								244
70								244
71								244
72								244
73								244
74								244
75								139
76								139
77								139
78								139
79				2018. 10. 11.	300	806		139
80								139
81								139
82								139
83								139
84								139
85								139
86								139
87								139
88								139
89								139
90				2018. 10. 11.	300			139
91								139
92								139
93								139
94								139
95								139
96								149
97								249
98								251
99				2008. 10. 13.	300			249
100								249
101								123
102								253
103								24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2

연번	사물관명	작품코드	출판명	제작발시	제작수	제작자, 계통의 등록번호의 등	저작자	권·저작자의 상행·계통의 (기록 3행)
104								140-142
105								141
106								145
107				2008-11-5	300			156
108								152
109								153
110								134
111								134
112								134
113								134
114				2009-1-15	300			134
115								134
116								134
117								134
118								134
119								122
120								122
121								122
122								122
123				2001-3-5	1500	755-768		122
124								122
125								122
126								122
127								122
128								122
129								122
130								122
131								122
132								122
133				2001-3-5	1500	769-775		122
134								122
135								122
136								122
137								122
138								122
139								334
140								335-336
141								339
142								342
143								345
144								479
145				2002-2-20	500			346
146								351, 349
147								355
148								350
149								335, 363
150								347
151								385
152								380
153								370, 168
154				2002-2-20	500			293, 394
155								309
156								335-336
157								170, 168
158								335, 363
159								403
160								408, 410
161								320
162								323
163				2000-4-1	500			326
164								327, 322
165								322
166								320
167								369
168								373, 369
169								374, 369
170								377, 369
171								369
172				2002-4-20	500			373, 369
173								373, 369
174								369
175								374, 369
176								374
177								37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2

행번	사건구분명	작품코드	음반명	제작일시	제작수	제작자	원·제작자명 인원·제작사 (가명·3명)
178							304
179							304
180							304
181							304
182							304
183							304
184							304
185							304
186							304
187							304
188				2022. 6. 15.	500		304
189							304
190							304
191							304
192							304
193							304
194							304
195							304
196							304
197							304
198							304
199							412, 163
200							414
201							418
202							168
203							427
204				2022. 7. 5.	500		430-433
205							437
206							440, 163
207							442
208							444, 447, 449
209							451, 163
210							454, 456
211							309
212				2022. 7. 5.	500		418, 458
213							460, 462
214							464, 467
215							469, 470
216							472, 474
217							477
218							478
219							481, 483
220							490
221				2022. 7. 5.	500		176
222							452
223							412, 494
224							499, 501
225							418
226							239
227							264, 268
228							280, 282, 278
229							284, 286
230				2022. 12. 10.	500		292
231							300
232							301
233							239
234							264, 268
235							292
236							308
237							31
238				2023. 3. 5.	500		308
239							308
240							308
241							30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2

연번	사물관명	작품코드	출판명	제작일시	제작수	제작자·제공자 출판권자·명	제작자	원·제작자·제공 신작·제작사 [기록·3명]
242								139
243								139
244								139
245								139
246								139
247								139
248								139
249								139
250								139
251								139
252								157
253				8619-55-11	350			159-161
254								163
255								167
256								168-171
257								143
258								173
259								140-142
260								145
261								145
262								150
263								152
264								153